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추석선물세트의 원산지결정기준

전희영 | 코스모스 관세사무소 관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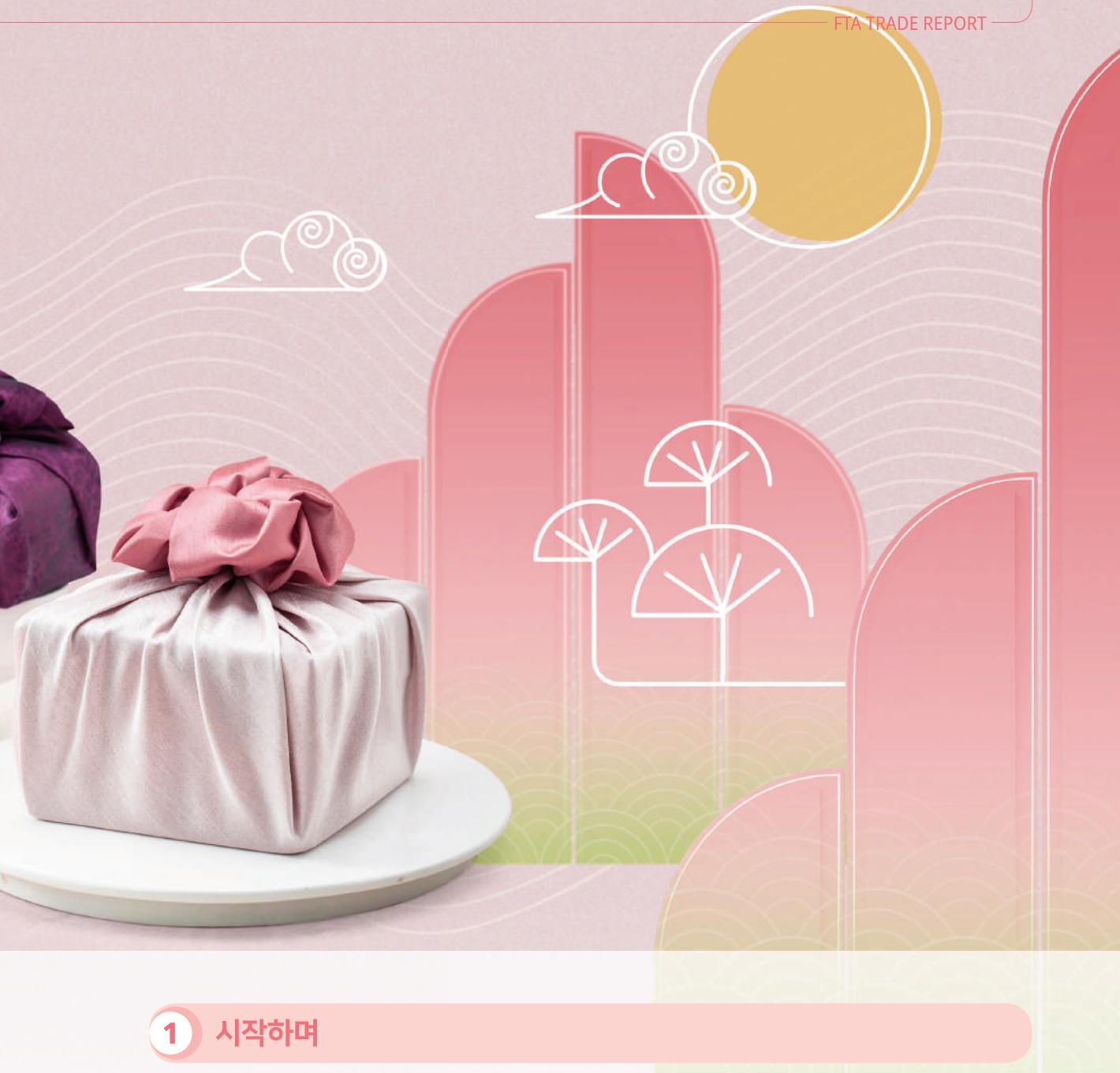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



추석선물세트의 원산지결정기준



전희영
코스모스 관세사무소
관세사



① 시작하며

이번 추석에는 어떤 선물을 할까? 명절이 돌아 올 때마다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할 것이다.

현금, 한우세트, 굴비세트, 곶감세트. 어떤 선물이 좋을지 괜스레 백화점과 마트를 둘러보면

눈돌아가는 선물세트들이 무척 많다.

아무리 현금 선물이 최고라고 해도 명절에 선물세트 하나쯤 받지 못하면 허전하게 느껴질 것 같아 선물세트를 구매하곤 한다.

필자는 식품 통관 전문으로 식품업종 고객사가 많다. 그분들도 이번 추석을 맞아 선물세트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 중 치즈를 수입하는 고객사에서 치즈 트레이 세트 수입관련 문의를 주셨다. 해당 고객사는 유럽에서 치즈를 주기적으로 수입하는데 이번

추석을 맞아 치즈 트레이, 치즈 나이프 등 커트 러리로 구성된 “치즈 트레이 세트”를 수입한다고 했다.

문제는 구성제품의 원산지가 각각 달라 FTA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2 FTA에서 세트물품의 정의

선물세트의 사전적 정의는 ‘선물용으로 상품을 모아 만든 세트’다. 상자에 한우 등심, 살치살, 채끝살, 부채살을 정갈하게 넣고 고급스럽게 포장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한우선물세트가 된다.

그러나 FTA에서의 선물세트는 다르다. FTA에서 세트(이하, “소매용 세트 물품”)로 인정받으려면 HS 협약(FTA는 HS 협약에 따라 HS 코드를 분류한다)에 따라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서로 다른 HS 코드에 분류되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6개의 풍류 포크는 HS 코드가 모두 같기 때문에 세트가 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한우선물세트 또한 HS 코드가 모두 동일하여 FTA에서는 세트물품이 아니다.

두 번째,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장 어려운데 뒤의 예시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세 번째,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하도록 소매포장 되어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추가 제조를 하거나, 재포장을 하거나, 다른 물품과 혼합한 이후 재판매하는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FTA에서 소매용 세트 물품은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이면서,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를 말한다.

예를 들어, 즉석요리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의 식료품이 함께 포장되어 있는 밀키트는 "소매용 세트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HS 협약에 나오는 세트의 예시를 더 살펴보자.

(1) 식품 세트

1) 빵 사이에 소고기를 넣은 햄버거(치즈가 들어있는 경우를 포함)(제1602호)와 프렌치프라이(제2004호)를 같이 포장한 세트 : 제1602호에 분류

2) 스파게티 요리를 준비할 때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된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 꾸러미(제1902호)·잘게 갈은 치즈(제0406호)·토마토 소스의 작은 깡통(제2103호)으로서 상자에 넣은 것 : 제1902호에 분류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



문화적, 사회 통념적으로 햄버거 세트에는 프렌치프라이가 빠질 수 없다. 햄버거세트라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함께 먹는 햄버거와 프렌치프赖이는 소매용 세트 물품이다.

스파게티 밀키트도 마찬가지로 스파게티 요리라는 요구를 충족하는 소매용 세트 물품이다. 그러나 함께 조합해서 구성된 물품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세트물품이 되지 않는다.

1) 새우통조림(제1605호)·치즈통조림(제0406호)·얇게 썰은 베이컨통조림(제1602호)·칵테일소시지 통조림(제1601호)

- 2) 증류주 1병(제2208호)과 포도주 1병(제2204호)
- 3) 유리병에 담긴 용해성 커피(제2101호)·도자제 컵(제6912호)과 도자제 받침 접시(saucer, 제6912호)

이런 조합은 “소매용 세트 물품”의 두 번째 기준인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1)의 통조림 구성은 일반적으로 각자의 용도에 따라 각각 먹도록 되어 있다. 2)의 증류주와 포도주도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함께 먹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여기서 폭탄주는 논외다. 만약 증류주와 포도주를 섞어서 폭탄주를 마시기 위해 고안된 세트라면 “소매용 세트 물품”이 될 수 있겠다.

3) 커피와 도자제 컵, 컵받침은 커피마시기 라는 요구를 충족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커피는 다 마시면 소모되지만 도자제 컵과 컵받침은 견고하게 디자인되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커피를 다 마신 후에도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커피마시기라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각 물품들은 각각의 적절한 호에 별도 분류하여야 한다.

(2) 이발기 세트

전기식 이발기(제8510호)·빗(제9615호)·가위(제8213호)·브러시(제9603호)·직물제 타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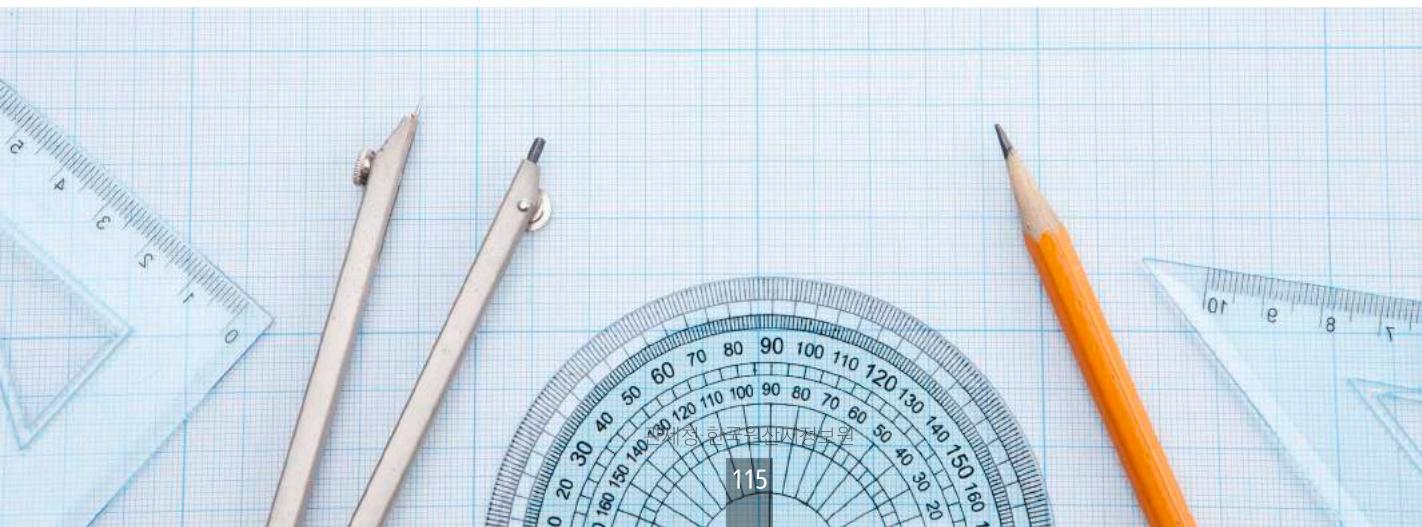
(제6302호)로 구성되어 있고, 가죽제 케이스(제4202호)에 넣은 이발용 세트 : 제8510호에 분류

(3) 제도용 키트

자(제9017호)·계산반(제9017호)·제도용 컴퍼스(제9017호)·연필(제9609호)·연필깎기(제8214호)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시트로 만든 케이스(제4202호)에 넣은 제도용 키트 : 제9017호에 분류

위에서 규정한 “소매용 세트 물품”的 경우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 요소에 따라 HS 코드를 분류해야 한다.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요소는 세트의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부피,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해당 물품을 사용할 때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3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소매용 세트 물품의 개념을 확인했으니 이제 원산지결정기준을 알아보자. FTA에서는 소매용 세트 물품의 특례규정을 정하고 있다.

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세트 구성품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협정별로 조금씩 다르게 정하고 있어 협정별로 살펴보아야 한다.

[표 1]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구분	EFTA, EU, 튀르키예,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미국		페루, 중국, 콜롬비아, 중미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반품목	섬유류		
세트물품 인정여부	인정	인정	인정	인정	X
비원산지물품 허용한도	EXW 가격의 15%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FOB 가격의 10%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허용X



대부분의 아메리카, 유럽 대륙 국가는 세트물품을 인정하고 있다. 반대로 대부분의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륙에서는 세트물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트물품을 인정하는 경우의 예시를 보자.

[표 2] 세트물품의 예시

미국에서 만든 햄버거 세트 구성	가격	비원산지 물품의 비율	원산지
미국산 햄버거 (제1602호)	햄버거 세트의 FOB 가격 4,000원	500원/4,000원 =12.5%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세트의 FOB가격의 15% 이하이므로 햄버거 세트 전체는 "미국산"
독일산 프렌치프라이 (제2004호) (비원산지물품)	수입가격 500원		

4 치즈 트레이 세트의 원산지

이제 다시 치즈 트레이 세트로 돌아와보자. 먼저 “소매용 세트 물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해당 세트는 견고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트레이 한쪽 끝에는 치즈나이프 등의 커트러리를 보관할 수 있도록 커트러리 모양으로 몰딩된 서랍이 있다.



[표 3] 치즈 트레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예시

치즈 트레이 세트 구성	서로 다른 HS 코드	어떤 요구를 충족 또는 어떤 특정한 활동을 수행	소매판
나무 치즈 트레이	제4419호	숙성치즈 등을 먹을 때 커트러리로 치즈를 잘라 트레이 위에 올려 치즈를 먹음> “치즈를 잘라 먹는” 요구 충족	충족
치즈 커트러리	제8211호		



"소매용 세트 물품"을 충족 한다. 그러나 트레이와 커트러리 역할이나 의도에 따라 트레이와 커트러리를 각각 사용할 수도 있도록 고안 했다면 소매용 세트 물품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자.

[표 4]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치즈 트레이 세트 구성	가격	비원산지 물품의 비율	원산지
영국산 나무 치즈 트레이(제4419호)	치즈 트레이 세트 EXW 가격 20,000원	2,000원/20,000원 =10%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세트의 EXW가격의 15% 이하이므로 치즈 트레이 세트 전체는 "영국산"
중국산 치즈 커트러리(제8211호) (비원산지물품)	수입가격 2,000원		

5 마치며

원산지결정기준에는 세트물품 규정과 같은 여러 가지 특례규정이 있어 알아두면 유용하다. 단, 세트물품 규정은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서 스스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기준인 "어떤 요구를 충족하거나 어떤 특정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필자도 가끔 아리송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린다.